

[현장논단]

인권의 현재, 보편주의의 재구성*

이 주 영**

1

새해 벽두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고 나와 뉴욕 구치소에 가두었습니다. 무력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법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었지만, 미국은 이를 국제법에 근거해 정당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 유엔헌장을 위반하여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학교, 의료시설, 민간인 주거지에 대한 폭격 역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1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¹⁾ 국제법은 필요 없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이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인권체제가 넘어서야 할 파도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위기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02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질서의 붕괴, 거대 강대국 간의 지정학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잔혹한 현실’”에 대해 말했습

*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 2026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인권체제에 대한 도전: 국제 분쟁과 혐오·차별의 정치> 기조강연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1) Sanger, David E., et al., “Trump Lays Out a Vision of Power Restrained Only by ‘My Own Morality’”, *New York Times*, 2026.1.8.

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흔히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혹은 미국 헤게모니 하의 국제질서라고 불립니다. 핵심적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력 사용 금지와 주권 및 영토 보전 존중의 법적 토대 마련; 둘째, 자유무역과 사회적 발전의 추구; 셋째,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의 제도화; 넷째, 이 모든 질서를 뒷받침하는 가치로서의 보편적 권리.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이 보편적 권리의 규범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단순히 규범과 가치의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우위에 기초했고, 그에 더하여,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 즉 특정 세계관과 규범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동의를 구조에 의존했습니다.³⁾ 마크 카니가 말하듯, “규범 기반 질서 내에서도 강대국들의 예외는 허용됐고, 무역규범도 비대칭적이었습니다. 국제법은 피고나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엄격함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질서는 금융, 무역, 집단 안보, 인권을 위한 틀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서는 심각하게 균열되고 있습니다.”⁴⁾

트럼프 1기이던 2017년, 국제인권법 학자 필립 알스톤은 “인권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도전”에서 인권 운동이 직면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분석했습니다.⁵⁾ 국제정치학자 스티븐 홉굿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2) Carney, Mark, Prime Minister of Canada, Special Address at Davos 2026, 2026.1.20. <https://www.weforum.org/stories/2026/01/davos-2026-special-address-by-mark-carney-prime-minister-of-canada/>

3) Gramsci, Antonio, *Letters from Pris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원어 초판 1947).

4) Carney (2026), 위 연설.

5) Alston, Philip, “The Populist Challenge to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2017) 1-15.

“인권의 종말” 테제⁶⁾를 언급하면서, 알스톤은 그러한 종말론적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위협, 시민사회 공간의 위축, 불평등과 배제, 국제법의 약화, 국제기구의 취약성이라는 다섯 가지 차원의 심각한 도전에 대응하여, 인권 운동은 기존의 가정들을 재검토하고 전략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경고가 나온 지 8년이 지난 지금, 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각 국가들의 국내 정치의 위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법학자 데이빗 그레왈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정당성이 두 가지 원천에 의존해왔다고 분석합니다.⁷⁾ 하나는 인민주권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 성과에 기반한 결과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경제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국제기구들은 점차 각국 정부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고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었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의사결정은 기술관료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민주적 심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냉전 시기 국제기구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결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분쟁은 형태를 바꿔 지속되었고, 2008년 금융 위기와 그에 따른 청년 실업 증가는 현실에 대한 실망을 낳았습니다. 그레왈은 양쪽 정당성의 원천이 동시에 약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⁶⁾ Hopgood, Stephen, *The Endtimes of Human Rights*,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⁷⁾ Grewal, David S., “Three Theses on the Current Crisis of International Liberalism,”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25(2) (2018) 595-621.

그레왈은 현재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위기를 자유주의 일반의 위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특정한 형태의 자유주의로 인한 위기로 진단합니다.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는 각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정책에서의 결정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⁸⁾ 1990년대에 급증한 양자 투자협정의 수는 2000년대에 이미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⁹⁾ 이 협정들은 투자자, 즉 기업에게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각국 정부가 인권과 환경 보호, 노동 기준, 공중 보건 등을 위해 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을 위축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기술 변화, 약화된 노동자 보호가 결합되어 빚어낸 결과로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이지 경제적 필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소외가 결합될 때, 특정한 정치적 역학이 작동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경제적 불안이라는 실재하는 고통을 이주민, 난민, 무슬림, 여성, 성소수자,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라는 가시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위협적으로 그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니 로드릭은 자유무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릴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보상과 재분배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그 불만은 연대와 재분배를 향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아닌 ‘타자’, ‘외부인’에 대한 적대와 배제를 향한 정치의 자원이 된다고 지적합니다.¹⁰⁾

8) Rodrik, Dani,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W.W. Norton (2011).

9) 양자 투자협정의 수는 유엔무역개발회의의 투자정책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

10) Rodrik, Dani, “Populism and the Economic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2018) 12-33.

현재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역사적으로 낯설지 않습니다. 칼 폴라니는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의 1기 세계화를 분석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¹¹⁾ 당시 금본위제 아래 자본은 국경을 거의 제한 없이 넘나들었고,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대의 낙관론자들은 무역과 투자로 연결된 세계에서 전쟁은 불가능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폴라니는 시장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작동하려 할 때 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작용을 일으킨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이중 운동’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1기 세계화가 낳은 사회의 자기 보호 기능이 왜곡되어 나타난 비극적 결과가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이었습니다. 사회를 시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운동이 민주주의적 방향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포획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이 교훈을 부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존 러기가 “임베디드 자유주의”라고 분석한 이 체제는, 국제적 개방성을 유지하되 각국이 국내에서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보장하였습니다.¹²⁾ 시장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그 기초였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은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으로 구상되었습니다.

11) 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2001, 원어 초판 1944).

12) Ruggie, John G.,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26(2), (1982) 379-415.

그러나 국제 의제로서 인권 담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이고,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겹칩니다. 새뮤얼 모인과 같은 학자들은 대안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이 도덕적 헤게모니를 차지했으나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막지 못한 채 무력한 동반자에 머물렀다고 비판합니다.¹³⁾

‘제3세계 국제법 접근(TWAIL)’은 더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합니다.¹⁴⁾ 1997년 결성된 이 지적 운동은, 국제법 체제 자체가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식민성이 현재까지 구조적으로 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앤터니 앵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법은 19세기 유럽이 비서구 지역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발전했습니다.¹⁵⁾ 정치적 독립을 얻은 이후에도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경제법 체제 안에서 원자재와 노동력 제공의 종속적 위치에 놓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활용했던 보호주의와 국가 개입의 수단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경제법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마카우 무투아는 국제인권 담론이 글로벌 사우스를 구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야만인-피해자-구원자” 서사를 재생산함으로써, 서구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비서구 사회에 대한 도덕적 오만함을 강화한다고 비판합니다.¹⁶⁾

13) Moyn, Samuel, “A Powerless Companion: Human Rights in the Age of Neoliberalism,”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77 (2015) 147-169.

14) Gathii, James T., “TWAIL: A Brief History of Its Origins, Its Decentralized Network, and a Tentative Bibliography,” *Trade, Law and Development* 3(1) (2011) 26-64.

15) Anghie, Antony,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2005.

16) Mutua, Makau, “Savages, Victims, and Saviors: The Metaphor of Human Right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2(1) (2001) 201-245.

인권 실천 내부로부터의 비판도 있습니다. 알스톤이 지적하듯, 국제인권법의 집행이 점점 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¹⁷⁾ 형사적 책임 추궁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이 접근은 가시적 가해자를 지목하고 처벌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조건들, 이를테면 빈곤, 체계적 불평등, 정책 공간의 박탈, 금융화가 만들어내는 만성적 취약성을 다루는 데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이 초래하는 고통은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권법의 언어로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습니다.

이 비판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무엇인가. 인권은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편적 인권의 실현에 대한 요구는 현 질서 내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없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규범적 동력이 됩니다. 인권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경합의 장을 포기하는 것은, 그 경합의 장을 기존 권력 관계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그렇다면 인권의 보편주의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정치철학자 세일라 벤하비브가 제안하는 ‘민주적 반복’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¹⁸⁾ 민주적 반복이란 인권 규범이 다양한 법적·정치적·문화적 맥락에서, 지역·국가·글로벌 다양한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재해석되고 재전유되며 재협상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수반합니다. 보편적 인권이란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과정입니다.

¹⁷⁾ Alston, Philip, “Criminalizing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15(3) (2023) 660-677.

¹⁸⁾ Benhabib, Seyla, “The Legitimacy of Human Rights,” *Daedalus* 137(3) (2008) 94-104, 98-101.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국제인권체제가 각국 정부 엘리트들로부터 유리된 기술관료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집단의 경험과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권의 실현이 사람들의 구체적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결과적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엔터니 앵기의 TWAIL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다원주의적 보편주의를 지향합니다.¹⁹⁾ 앵기는 TWAIL이 서구의 자유와 평등 이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도 비판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와 지식이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다원주의적 보편주의를 향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대주의나 반보편주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논의를 종합하면, 보편주의는 포기될 수 없지만, 그것은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가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경험과 지식을 포함하는 다원주의적 보편주의여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행성적 관점으로서의 확장 역시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러한 이론적 재구성이 인권 실천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사회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대표성의 결핍 그 자체가 인권의 의제입니다.

경제·사회적 권리를 시민·정치적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권으로 재정립하는 것, 기업의 인권 책임을 연성법을 넘어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강화하는 것, 그리고 각국이 인권, 환경, 보건, 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 공간을 회복하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등주

¹⁹⁾ Anghie, Antony, "Rethinking International Law: A TWAIL Retrospective,"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4(1) 7-112, 109.

의적 자유주의 원칙²⁰)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질화, 불평등 해소, 그리고 목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국제인권 법적 논거를 뒷받침하는 도덕철학적 자원 중 하나입니다.

둘째, 인권이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 불평등, 생태적 한계, 디지털 기술에의 새로운 종속 등 우리 시대의 과제들에 인권이 실질적인 규범적 자원을 제공할 때, 인권은 현 시대의 과제들에 응답하는 언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절된 경험들 사이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보통 사람들의 경험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컬과 내셔널, 글로벌 차원을 연결하는 인권 연구와 실천이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상상된 적’ 메커니즘에 대한 인권 관점의 비판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포퓰리즘이 사회경제적 불안을 이주민, 난민, 여성, 성소수자, 특정 국가라는 ‘상상된 적’을 향한 적의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은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혐오와 차별을 증폭합니다. 인권 연구는 이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그와 다른 방식으로 연대와 포용의 ‘우리’를 구성하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지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²⁰ 존 롤즈, 『정의론 (Theory of Justice)』, 이학사 (2003, 원어 초판 1971); 대니얼 채들러, 『자유와 평등 (Free and Equal: A Manifesto for a Just Society, 홍기빈 옮김)』, 교양인 (2026, 원어 초판 2023).

6

국제인권체제의 현재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서 현실적으로 답을 모색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권 존중과 보호, 각국의 정책 공간 존중, 기후 위기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권력이 덜 집중된 국제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국제인권체제에서 규범의 수용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분리될 수 없음을 경험해 온 한국의 인권공동체가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인권체제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